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FAQ

2014. 11.

본 FAQ는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」(이하 '정보처리 위탁규정')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산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목 차

Ⅰ 정보처리의 위탁 관련

1 통상적으로 IT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위탁이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가? ---------- 1

2 '안내서' 7쪽을 보면, 정보처리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'정보처리가 수행되는 전산장비·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허용하되'라고 기술되어 있는데, 이 설명이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제한하여 나열한 것인지? ---------- 1

3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도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? ---------- 2

4 한국에 위치한 전산센터의 전산설비를 해외계열사가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가? ---------- 3

5 외국의 거래확인시스템의 사용도 정보처리 위탁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가? ---------- 3

Ⅱ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관련

1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 위탁시에도 각 권역별 '리스크관리 모범규준'을 적용해야 하는지? ---------- 4

2 전자우편(이메일)도 원장(Ledger)에 해당되는지? ---------- 4

3 기존 위탁시스템(SW)을 기능이 동일한 다른 시스템(SW)으로 변경·위탁할 경우 신규 전산설비 위탁으로 보는지? ---------- 4

Ⅲ 사후보고 관련

1 규정 개시일 이전에 보고했던 사항에서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위탁인지 사후보고 대상인지? ---------- 5

2 기승인·보고된 시스템을 또 다른 승인·보고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사후보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? ---------- 5

3 정보처리 위탁규정 시행('13.6.25.) 이전에 '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동일 권역의 금융회사가 위탁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전산위탁규정 제7조 제2항'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? --- 6

Ⅳ 기타

1 본점과 계약한 제3자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행위는 위탁으로 볼 수 있는가? --- 7

2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전산위탁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? ---------- 7

3 내부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외주용역도 본 위탁규정 적용 대상인지? ---------- 7

4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 위탁시 준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 ------ 8

5 전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 인터넷데이터센터(IDC)의 상면임차를 하는 경우도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적용 대상인가? ---------- 8

6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(정보처리 위탁규정 제5조제2항)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 ---------- 9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Ⅰ. 정보처리의 위탁 관련

1 통상적으로 IT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위탁이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가?

□ 해당 업무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적인 IT전담부서 및 IT인력들이 처리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정보처리업무로 인정하고 있으며,

○ 이외의 경우*에는 일반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음

* 예) 포트폴리오·회계의 상호비교 또는 대조 등의 업무(대사업무), 수익계정 항목의 무결성 점검 및 손익 내부 보고 등

○ 다만, IT전담부서 및 IT인력 외 일반부서의 직원도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

2 안내서 7쪽을 보면, 정보처리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'정보처리가 수행되는 전산장비·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허용하되'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, 이 설명이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제한하여 나열한 것인지?

□ 안내서의 동 설명은 정보처리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것으로,

○ 재위탁 가능 범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3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도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?

□ 유지보수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발 외주용역은 본 규정 적용 대상이나,

○ 용역 계약이 단순히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에 한정되고,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

* 참조 :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

○ 안내서 7쪽에서 정보처리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예시로 '프로그램 변경·개발'이 명시되어 본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, 이는 실제 정보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됨

4 한국에 위치한 전산센터의 전산설비를 해외 계열사가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가?

* 예) 전산센터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 등

□ 서버 업그레이드 등의 IT유지보수 업무는 금융거래정보의 이관, 저장 등의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임

* 전산센터가 한국에 있으므로 전산설비 해외위탁은 아님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5 외국의 거래확인시스템*의 사용도 정보처리 위탁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가?

* (예)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시스템 (MarkitWire)
외환거래확인시스템 (FXALL)
외국환 청산업무 처리시스템(송금·자금이체 요청 SWIFT의 단순전달)

□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

○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고

○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, 정보처리 위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Ⅱ. 전산설비 국외위탁 관련

1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 위탁 시에도 '리스크관리 모범규준' 을 적용해야 하는지?

□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시 고객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으며,

○ 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모든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된 원장이 국외위탁 될 경우 위탁심사 단계에서 금융이용자의 보호와 금융감독 목적상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음

2 전자우편(이메일)도 원장(Ledger)에 해당되는지?

□ 원칙적으로 전자우편은 원장으로 보지 아니함

○ 다만, 전자우편을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금융거래를 체결하는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도 원장에 해당될 수 있음

3 기존 위탁시스템(SW)을 기능이 동일한 다른 시스템(SW)으로 변경 · 위탁할 경우 신규 전산설비 위탁으로 보는지?

□ 정보처리 위탁규정§2④에 의거 SW도 전산설비로 보고 있으므로 전산설비 위탁으로 판단 가능함

○ 다만, 금융업 영위와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시스템(SW)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사후보고가 가능함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Ⅲ. 사후보고 관련

1 규정 개시일 이전에 보고했던 사항에서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위탁인지 사후 보고가 가능한지?

□ 정보처리 위탁규정 §7② 및 부칙 §2의 경과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전산설비가 변경되는 등의 주요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*으로 보아 사후보고 대상임

* 예) 해외본사에 위탁하던 기간 및 비용 변경 또는 파생상품 시스템 교체 위탁 종료기간 도래에 따른 기존의 계약자와 동일한 자동 갱신계약

○ 다만, 전산설비가 해외 위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임

2 기승인 · 보고된 시스템을 또 다른 승인 · 보고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사후보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?

* 예) A라는 시스템을 사용 도중 일부 기능을 기 승인된 B라는 시스템과 통합

□ 기승인·보고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,

○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함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3 정보처리 위탁규정 시행('13.6.25.) 이전에 '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' 에 따라 동일 권역의 금융회사가 위탁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7조 제2항*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?

* 제7조(보고)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음

1.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,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

□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라 동일 권역의 금융회사가 동일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,

○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Ⅳ. 기타

1 본점과 계약한 제3자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행위는 위탁으로 볼 수 있는가?

* 예) 본점과 계약관계인 보안업체의 관제서비스를 서울지점 등에 무상 제공

□ 정보처리 위탁규정 §2⑥에 의거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(재)위탁으로 판단함

○ 안내서 8쪽에서는 재수탁회사의 전문성과 기술력·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전문 IT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위탁 허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음

* 단, 재위탁시 원수탁업자의 데이터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함

2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정보처리 위탁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?

□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

3 내부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외주용역도 본 위탁규정 적용 대상인지?

□ 후선업무 처리용 정보시스템의 외주용역도 정보처리가 수반된다면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임

○ 관련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시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이나,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로 가능함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4 국외위탁을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
□ 준비서류는 정보처리 위탁규정 안내서(13 ~ 14쪽) 참조

* 위탁계약서(안) 사본 등 13종

□ 신청 절차

① 사전협의(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)
② 신청서 제출
③ 예비심사(금감원, 2개월 이내)
④ 승인(금융위, 1개월 이내) : 전산설비 국외위탁인 경우

5 전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 인터넷데이터센터(IDC)의 상면임차*를 하는 경우도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적용 대상인가?

* 전산설비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IDC 내의 상부면적을 임차하는 것

□ 금융회사 소유의 전산설비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업의 IDC에 단순히 서버공간*만을 임차하는 경우, 정보처리 위탁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며 '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적정함

* 항온항습기, UPS 등 전산설비가 아닌 장비 포함

○ 다만 외국에 있는 IDC를 임차하는 경우는 동 전산설비의 관리도 국외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,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6조(전산설비의 국외위탁)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⑥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

□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외에도 위탁 처리되는 고객의 금융관련 정보 및 수탁자에 대한 통제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방안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

2080801 / 2014-12-03 15: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